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2019. 5. 28.



부산광역시교육청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목 차

I. 결산검사 의견서	1
II. 결산검사 결과 요약	3
III. 개선 및 권고사항	14
1. 성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14
2. 전기오류수정이익의 최소화 및 주석공시	18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	20
4. 미수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21
5. 사립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독려	24
6.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효율적 예산 운용	26
7. 민간위탁사업 운영기준 마련	29
8. 성인지 결산서에 관한 사항	32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I. 결산검사 의견서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9년 5월 14일부터 2019년 5월 28일까지(15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18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 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작성하여 제출한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채무의 결산, 기금·공유재산·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28일

부산광역시 결산 검사 위원

대표위원	정 종 민	
위원	김 정 량	
위원	고 대 영	
위원	선 종 민	
위원	정 태 윤	
위원	성 창 홍	
위원	양 은 진	
위원	선 근 우	
위원	홍 부 국	
위원	송 재 호	

II. 결산검사 결과 요약

1. 세입·세출 결산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2018회계연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은 4,465,790백만원, 세출은 4,123,262백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352,493백만원이었습니다.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세 입	세 출	차 액
4,465,790	4,475,755	4,123,262	352,493

나. 세입결산

2018회계연도 세입 결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4,480,402백만원이었고, 미수납액은 4,628백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자체 수입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 납액
장	관					
합 계		4,465,790	4,480,402	4,475,755	19	4,628
이전수입		4,087,007	4,090,037	4,090,037	0	0
	중앙정부이전수입	3,289,885	3,290,290	3,290,290	0	0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 납액
장	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793,033	795,658	795,658	0	0
	기타이전수입	4,089	4,089	4,089	0	0
자체 수입		85,400	96,982	92,335	19	4,628
	교수-학습 활동수입	45,903	47,503	47,287	13	203
	행정활동수입	1,584	1,346	1,346	0	0
	자산수입	13,286	13,611	13,611	0	0
	이자수입	4,006	5,908	5,908	0	0
	금융자산회수	3,329	3,334	3,334	0	0
	기타수입	17,292	25,280	20,849	6	4,425
차입		65,663	65,663	65,663	0	0
	지방교육채	65,663	65,663	65,663	0	0
기타		227,720	227,720	227,720	0	0
	전년도이월금	227,720	227,720	227,720	0	0

다. 세출결산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465,790백만원이었고, 지출액은 4,123,262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16,059백만원, 집행잔액은 126,469백만원이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부문	정 책 사 업				
합 계		4,465,790	4,123,262	216,059	126,469
051.유아및초중등교육		4,047,039	3,758,419	191,309	97,311
	01.인적자원운용	1,902,592	1,883,199	165	19,228
	02.교수-학습활동지원	243,477	229,612	3,240	10,625
	03.교육복지지원	484,046	480,344	0	3,702
	04.보건/급식/체육활동	65,887	49,351	12,588	3,948
	05.학교재정지원관리	772,852	765,751	0	7,101
	06.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578,185	350,162	175,316	52,707
053.평생·직업교육		20,956	19,502	0	1,454
	07.평생교육	20,955	19,501	0	1,454
	08.직업교육	1	1	0	0
054.교육일반		397,795	345,341	24,750	27,704
	09.교육행정일반	46,800	30,471	9,766	6,563
	10.기관운영관리	44,866	27,838	14,984	2,044
	11.지방채상환및리스크	284,025	283,479	0	546
	12.예비비및기타	22,104	3,553	0	18,551

라. 세계잉여금

2018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잉여금 총액은 352,493백만원이었고, 명시이월액 179,796백만원, 사고이월액 11,770백만원, 계속비이월액 24,493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36,434백만원이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합 계	352,493
명 시 이 월	179,796
사 고 이 월	11,770
계 속 비 이 월	24,493
보 조 금 잔 액	0
지 방 교 육 채 상 환	0
순 세 계 잉 여 금	136,434

2. 재무제표의 결산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재정상태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7	전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자 산	6,117,846	5,940,574	177,272	3.0%
I. 유 동 자 산	566,894	527,197	39,697	7.5%
II. 투 자 자 산	148,030	132,365	15,665	11.8%
III. 유 형 자 산	5,401,365	5,278,515	122,850	2.3%
IV. 무 형 자 산	1,228	1,240	△ 12	△ 1.0%
V. 기타비유동자산	329	1,257	△ 928	△ 73.8%
부 채	526,670	724,397	△ 197,727	△ 27.3%
I. 유 동 부 채	76,946	28,223	48,723	172.6%
II. 장기차입부채	387,609	665,735	△ 278,126	△ 41.8%
III. 기타비유동부채	62,115	30,439	31,676	104.1%
순 자 산	5,591,176	5,216,177	374,999	7.2%
I. 고정순자산	4,998,672	4,655,041	343,631	7.4%
II. 일반순자산	592,504	561,136	31,368	5.6%

2018회계연도 말 교육비특별회계의 자산은 6조 1,178억원으로 전년도 5조 9,406억원 보다 1,772억원(3.0%)증가하였는데, 이는 유동자산이 397억(7.5%) 증가, 투자자산과 유형자산이 각각 157억(11.8%), 1,229억(2.3%)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018회계연도 말 교육비특별회계의 부채는 5,267억원으로 전년도
7,244억원보다 1,977억원(27.3%) 감소하였는데, 차입금 조기 상환으로
장기차입부채가 2,781억원(41.8%) 감소하였고 유동부채와 기타 비유동부채가
각각 487억원(172.6%), 317억원(104.1%)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나. 재정운영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7	전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수 익	4,197,182	3,969,412	227,770	5.7%
I. 이 전 수 익	4,093,448	3,861,120	232,328	6.0%
II. 자 체 수 익	59,312	63,964	△4,652	△7.3%
III. 기 타 수 익	44,422	44,328	94	0.2%
비 용	3,822,183	3,644,380	177,803	4.9%
I. 인적자원운용	1,870,704	1,794,126	76,578	4.3%
II. 교수-학습활동지원	225,172	211,419	13,753	6.5%
III. 교육복지지원	480,316	475,577	4,739	1.0%
IV. 보건/급식/체육활동	32,893	31,059	1,834	5.9%
V. 학교재정지원관리	765,751	741,281	24,470	3.3%
VI.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67,029	33,734	33,295	98.7%
VII. 평생교육	16,519	15,561	958	6.2%
VIII. 직업교육	1	1	0	0%
IX. 교육행정일반	28,611	18,692	9,919	53.1%
X. 기관운영관리	14,252	13,637	615	4.5%
XI. 지방채상환및리스료	22,069	27,255	△5,186	△19.0%
XII. 기타비현금지출비용	298,866	282,038	16,828	6.0%
운 영 차 액	374,999	325,032	49,967	15.4%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익은 4조 1,972억원으로 전년도의 3조 9,694억원보다 2,278억원(5.7%)증가하였는데, 이는 자체수익이 47억원(7.3%) 감소하였으나 주 수입인 이전수익이 2,323억원(6.0%)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의 비용은 3조 8,222억원으로 전년도의 3조 6,444억원보다 1,778억원(4.9%)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비용이 52억원(19.0%) 감소하였으나, 인적자원운용비용과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용, 학교재정지원관리비용이 각각 766억원(4.3%), 333억(98.7%), 245억원(3.3%) 증가함에 주요 기인합니다.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운영차액은 3,750억원으로 전년도의 3,250억원보다 500억원(15.4%)이 증가하였으며, 운영차액 증가의 주요 원인은 교부금, 전입금 등 이전수익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3. 성과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18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는 본 회계연도의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전략목표 9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44개의 성과목표와 8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 하였습니다.

(단위 : 개, %)

구분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A)	초과달성, 달성 수(B)	미달성 수	달성률(B/A)
1	학생 미래핵심역량 강화	7	14	14	0	100%
2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직업 교육	4	7	4	3	57%
3	가르치는 보람으로 즐거운 교실	4	9	6	3	67%
4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	3	4	2	2	50%
5	활기차고 건강한 학교	5	7	6	1	86%
6	안전하고 청렴한 교육환경	6	13	10	3	77%
7	희망과 나눔의 교육복지 실현	6	13	11	2	85%
8	소통과 공감의 신뢰받는 교육행정	4	9	8	1	89%
9	현장 중심의 학교 문화 혁신	5	12	8	4	67%
합 계		44	88	69	19	78%

교육비특별회계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학생 미래핵심역량 강화’ 성과지표는 100%를 달성한 반면, ‘존중과 배려의 인성 교육’ 성과지표는 50% 달성에 그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4.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가. 공유재산

2018회계연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용 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증 가 액	감 소 액	
합 계	8,516,094	259,040	98,211	8,676,923
행정재산	8,490,621	248,434	87,653	8,651,402
일반재산	25,473	10,606	10,558	25,521

나. 물품

2018회계연도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개 / 백만원)

전년도말 현재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수량	금액	증가		감소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3,134	42,012	984	3,586	950	3,034	13,168	42,564

다. 채권

2018회계연도 채권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발생액	소멸액	
합 계	109,636	198	3,555	106,279
원어민영어교사전세자금	90	0	10	80
입 학 금 및 수 업 료	221	161	179	203
변 상 금	156	0	26	130
대 여 장 학 금	104,507	0	3,329	101,178
임 차 보 증 금	860	0	0	860
재 산수입(임대료 등)	1	0	1	0
기 타 채 권	3,801	37	10	3,828

라. 채무

2018회계연도 채무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채무발생액	상환 · 소멸액	
합 계	682,751	65,663	302,672	445,742
차 입 금	442,688	65,663	285,661	222,690
B T L	240,063	0	17,011	223,052

마. 금고

2018회계연도 금고결산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증 가 액	감 소 액	
교육비 특별회계	269,081	4,206,674	4,123,262	352,493

Ⅲ. 개선 및 권고사항

1. 성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특정 성과지표는 과거에 기 달성한 성과지표로 확인되었고, 목표치가 100% 달성될 수 밖에 없는 지표 등을 활용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검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과거에 기 달성한 성과지표

구분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달성여부	달성률
1	안전하고 청렴한 교육환경	IV-2 학교안전 강화	현장대응 실제 훈련참여율(%)	달성	100%

위 성과지표는 전기에 이미 달성된 성과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성과목표의 구체적인 달성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나. 목표치가 100% 달성될 수 밖에 없는 지표

구분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달성여부	달성률
1	학생 미래핵심역량 강화	I-3 미래핵심 역량을 키우는 행복 독서교육	1교 1독서(토론) 동아리 운영	달성	102.6%
2	가르치는 보람으로 즐거운 교실	III-3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운영의 내실화	능력향상연수 이수율(%)	달성	100%
3	가르치는 보람으로 즐거운 교실	III-4 교원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내실화	직무연수 80시간 이상 이수자 비율(%)	달성	100%
4	안전하고 청렴한 교육환경	VI-5 교육인프라 구축 및 교육환경 개선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율(%)	달성	100%
5	희망과 나눔의 교육복지 실현	VII-4 교육격차 해소로 균형있는 행복교육	교육급여 부정수급 환수율(%)	달성	100%
6	희망과 나눔의 교육복지 실현	VII-6 다문화·탈북학생 교육활동 지원 강화	다문화·탈북학생 교육사업 참여 학생 비율(%)	달성	100%

위 성과지표는 사실상 100% 달성될 수 밖에 없는 지표를 설정하여 성과목표의 구체적인 달성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 목표치 설정에 대한 분석미흡(달성률 저조 및 과다 초과달성)지표

구분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달성여부	달성률
1	학생 미래핵심역량 강화	I-1 2015개정 교육과정 현장 안착 지원강화	공동 교육과정 운영 일반교 참여율(%)	달성	234.5%
2	안전하고 청렴한 교육환경	VI-2 학교안전 강화	교직원 안전관련 전문교육 이수율(%)	달성	173.5 ¹⁾ %
3	안전하고 청렴한 교육환경	VI-5 교육인프라 구축 및 교육환경 개선	학교 공기정화장치 시범설치 비율(%)	달성	294.4%
4	희망과 나눔의 교육복지 실현	VII-5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사항 나눔	교육기부 협약 (전달)실적(%)	미달성	65%
5	소통과 공감의 신뢰받는 교육행정	VIII-2 학부모 참여 문화 확산	학부모교육 참여 인원 증가율(%)	달성	850%
6	소통과 공감의 신뢰받는 교육행정	VIII-4 효율적인 인력운용으로 조직 경쟁력 강화	인사노무관리 연수 증가율(%)	달성	190%

1) 실제 173.5%이나 100%로 표시하고 있음.

목표치를 초과달성하거나 미달성한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목표치 또는 실적치 설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초과달성 또는 미달성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후 개선이 필요합니다.

라. 성과지표 측정산식의 임의 변경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변경내역
	VII-1 유아 행복 실현을 위한 유아교육 운영 내실화	숲교육 유치원 및 생태유아교육거점 유치원 운영율(%)	'17: (숲교육 및 생태 유아교육 거점 유치원 지원수/숲교육 및 생태 유아교육 거점유치원 신청수)×100 '18: (숲교육 및 생태 유아교육 거점 유치원 운영 유치원수/전체 유치원수)×100	'17년도와 18년도 측정산식이 다름
	IX-3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업무 정상화	결원 기간제 교사 선발 배정(%)	(2018학년도 교육청 선발 배정 기간제교사 /2018학년도 결원교사) ×100	'17년도와 '18년도 성과지표는 동일하나 성과지표 표시방법이 다름

위 성과지표는 당기에 성과측정방법을 변경하였으나 비교 표시된 전기의 성과지표를 변경되기 전의 값으로 표시함으로써 동일한 단위사업에 대한 성과수준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기의 실적치를 당기의 성과측정방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 성과지표 측정산식에 대한 검토 및 보완 필요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보완(안)
1	학생평가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평가 내실화	I -2 단위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평가 컨설팅 참여학교수	(단위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 참여수 /전체 일반고수)×100	분자는 컨설팅횟수인데 반하여 분모는 학교수로 되어있어 실적률이 과대평가될 수 있음 안1) 중복계산되지 않도록 동일고교 중복참여수는 제외 안2) 분모 및 분자를 컨설팅횟수로 변경
2	활기차고 건강한 학교	V -4 몸과 마음이 건강한 부산학생 만들기	보건교사 의료인 보수교육 이수율(%)	학교에 적합한 의료인에 대한 교육제공이 주목적이므로 “보건교사 의료인 보수교육 이수율 측정방식” 보완 ⇒(교육연수이수 지원 인원수/교원연수계획 인원수)×100
3	소통과 공감의 신뢰받는 교육 행정	VIII-1 교육정책 소통 활성화	부산교육 관련 언론매체 보도 증감율(%)	적정 보도수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기사수 증감율 보다는 “목표 보도수 대비 실적 보도수”로 측정방식 보완
4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직업 교육	II-2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강화	중고교 학생 진로·직업체험 참여율(%)	교육부에 보고하는 “진로교육 실적보고”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환산진로체험학생수/학생수”
5	현장 중심의 학교문화 혁신	IX-4 사교육 경감 대책 추진	사교육 참여 증감율(%)	사교육 참여율 감소가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는 계속 증가함

위 성과지표는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 성과지표로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과목표를 정확하게 정의한 후 동 성과지표가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적합한 지표인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전기오류수정이익의 최소화 및 주석공시

가. 현황

교육비특별회계의 재무제표 재정운영표상 당기와 전기의 전기오류수정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7~2018년 전기오류수정이익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	2017년	2018년	비고
금액	6,718	6,477	재산등재 시기차이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주로 당기 이전에 취득한 자산(공유재산 및 물품)을 재산(공유재산 및 물품)대장에 등재하지 못하고 당기에 등재한 경우 발생하고 있으며, 2년마다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재물조사 시행연도에 누락재산 등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물조사 시행연도 : 2015년말, 2017년말)

나. 문제점

전기오류수정이익은 당기 이전에 발생한 계산상의 차이, 사실의 누락 등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계 상의 오류를 바로 잡아 당기의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비정상적인 항목입니다. 전기오류수정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당기 재정운영표의 왜곡을 가져와 전기와의 비교가능성을 저해하는 등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전기오류수정이익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33조에 따르면 재무보고는 교육청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에게 재무활동에 관한 합리적 의사 결정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고,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따르면 오류의 수정은 당기 이전에 발생한 계정분류의 오류, 계산상의 오류, 사실의 누락 등에 따라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하는 것으로서 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기업 회계기준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당기 이전에 발생한 오류가 중요한 경우 오류 발생 시점의 재무제표를 직접 수정하고 중요하지 않은 오류는 당기의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으나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개선 및 권고사항

2016년부터 학교관리 재산 중 미등록된 입목죽 및 공작물 등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하고, 통합자산관리시스템 등록을 추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지출시점과 자산등재 시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향후 교육지원청 및 학교 등 관련기관에서 당기에 취득한 자산을 취득시점에 재산(물품)대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교육비특별회계 재무제표의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에게 재무 활동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오류수정 내역에 대하여 재무제표의 주석에 기재를 당부 드립니다.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

가. 현황

교육비특별회계의 2018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예·결산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A)	수납액(B)	미편성예산액 (B-A)	미편성비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53,091	56,924	3,833	6.7%

나. 문제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은 취득세율인하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되는 보전금으로서 2018년도에 56,924백만원을 교부받았으나 이 중 53,091백만원만 예산에 편성되어 3,833백만원이 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 개선 및 권고사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의 경우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최초 내시(內示)금액과 최종 수납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교육부 및 각 관리 지자체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4. 미수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가. 현황

교육비특별회계 재무제표 재정상태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따른 미수채권 대손충당금 평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수채권 및 대손충당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내역	채권액	대손율	대손충당금
미수지방 자치단체 이전수익	미수지방교육세전입금	107,909	-	-
	미수담배소비세전입금	24,206	-	-
	미수시도세전입금	49,445	-	-
	미수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11,921	-	-
	소 계	193,481		-
미수등록금 수익	미수입학금	-	-	-
	미수수업료	144	9.39%	14

	소 계	144		14
미수제재금 수익	미수제재금수익	211	-	-
	소 계	211		-
기타 미수채권	기타미수채권	4,207	-	-
	소 계	4,207		-
합 계		198,043		14

교육비특별회계는 과거 3년 평균대손율(결손처리기준)을 기준으로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미수수업료 외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미수채권 중 지방자치단체이전수익 외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미수채권의 구분 및 미회수기간을 분석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미수채권 미회수기간>

(단위 : 백만원)

구 분	미회수기간	채 권 액
소송비용액	6년 ~ 10년	10
	3년 ~ 5년	52
	1년 ~ 2년	15
	소 계	77
징계부가금	6년 ~ 10년	379
	소 계	379
부당이득	10년 초과	4

반환금	6년 ~ 10년	39
	3년 ~ 5년	24
	1년 ~ 2년	128
	소 계	195
손해배상액	10년 초과	2,629
	6년 ~ 10년	927
	소 계	3,556
합 계		4,207

나. 문제점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르면 미수채권에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한 평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과거의 대손율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2018년 기말 현재 미수채권 중 미회수 기간, 채무자의 재산조회 현황 등을 볼 때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장기 미수채권(5년 초과 채권 약 40억원)이 상당 부분 있으나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 개선 및 권고사항

회계기준에서 의미하는 미수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은 결손처분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재무결산 시 결손처분 전이라도 채권별 회수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장기 미수채권에 대해서는 독촉, 압류 등의 절차에 따라 채권회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소멸시효 경과 등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불납결손처분을 검토하는 등 미수채권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립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독려

가. 현황

2018년 유치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 결산 및 실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결산>

(단위 : 천원)

소관부서	단위사업	예산	결산	집행잔액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잔액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교원인사관리	177,203	99,723	75,200	2,280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현황>

(단위 : 개원, %)

구분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합계
대상	98개원	187개원	285개원
참여	98개원	7개원	105개원
참여비율	100%	3.7%	37%

나. 개선 및 권고사항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2018년 3월 1일부터는 5학급 이상 사립유치원은 교원능력개발평가 대상이며, 2019년 3월 1일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적용됩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8조(교원능력개발평가)

-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37조 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수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매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이하 “교원능력개발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②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 상호 간의 평가 및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217호, 2017.5.19.)

부칙 제2조(경과조치) 제1조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법」 제7조 제3호에 의해 설립된 사립유치원 교원의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일에 시행한다.

- 1. 공포일 : 7학급 이상 사립유치원
- 2. 2018년 3월 1일 : 5학급 이상 사립유치원
- 3. 2019년 3월 1일 : 모든 사립유치원

다만, 2018년의 경우 연합회 차원에서의 집단반발, 원장에 대한 교사의 평가 등을 이유로 사실상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거부한 상황으로 다수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적용이 의무화되었으므로, 사립유치원과의 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협조 요청, 우수한 사립유치원 및 우수교사에

대한 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추진 당부드립니다.

6.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효율적 예산 운용

가. 현황

2018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부사업인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비율	잔액비율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398,781	271,581	78,115	49,085	19.6%	12.3%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기관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소관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잔액	이월률 (A)	불용률 (B)	합계 (C=A+B)
행정국교육시설과	55,895	53,423	770	1,702	1.4%	3.0%	4.4%
서부교육지원청	65,248	43,924	12,134	9,190	18.6%	14.1%	32.7%
남부교육지원청	71,975	50,876	11,370	9,729	15.8%	13.5%	29.3%
북부교육지원청	65,203	36,442	22,383	6,378	34.3%	9.8%	44.1%
동래교육지원청	68,505	42,457	14,001	12,047	20.4%	17.6%	38.0%
해운대교육지원청	71,955	44,459	17,457	10,039	24.3%	13.9%	38.2%
합계	398,781	271,581	78,115	49,085	19.6%	12.3%	31.9%

한편, 교육비특별회계 전체와 세부사업 단위인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이월금 및 집행잔액 규모를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이월금 등>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이월금	집행잔액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4,465,790	216,059	126,469
교육환경개선사업	398,781	78,115	49,085
비율	8.9%	36.1%	38.8%

나. 문제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예산현액은 398,781백만원으로 2018년 교육비특별회계 총 예산현액 4,465,790백만원의 약 9%에 해당하여 금액적으로 비중이 높은 사업이며, 교육수요자인 초·중·고등학생 입장에서도 교육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액의 약 9%에 해당하지만, 이월금 및 집행잔액 비율은 전체 이월금 및 집행잔액의 약 40%에 해당함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이월금 및 집행 잔액 발생액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만 공사가 가능한(고등학교의 경우 수능시험 등의 영향으로 겨울 방학만 공사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과도한 예산이 매년 이월되고 있고 무엇보다 불용되는 예산액의 규모가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됩니다.

다. 개선 및 권고사항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이월액 주요 발생 사유는 학교의 학사일정으로 입찰 또는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예산편성 시 계획했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이유이며, 집행 잔액의 경우 주로 낙찰 시점의 낙찰차액과 준공 시 발생 되는 안전관리비 등 정산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편성 시점부터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의하여 연내에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업을 계획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 잔액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아래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1) 입찰에 따라 발생한 낙찰차액은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처리
 - 1, 2회 추경예산 편성 시 설계용역비 등 집행 잔액 감액
- 2) 다른 사업에서 추경 시 예산을 감액한 경우, 연내 사업의 완료가 가능하고 학교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학습교구 등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지원
- 3) 여름방학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기 발주하여 적정 공사기간 확보

7. 민간위탁사업 운영기준 마련

가. 현황

2018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세목 기준 위탁사업비 및 민간위탁금 사업비 예·결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목 기준 민간위탁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목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주요사업
위탁사업비 (210-13)	20,260	18,201	793	1,266	학리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수상안전체험과정 운영
민간위탁금 (320-02)	26,741	26,289	-	452	창의공작소 운영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플러스 놀이마루 운영
합계	47,001	44,490	793	1,718	

관련 법령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 조례 등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정의 및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사무의 위임·위탁 등)

③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와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 ① 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민간위탁 사무)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는 별표와 같다.

- [별표] 1.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2. 문화·예술 관련 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3. 체험활동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위의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에 해당 될 경우 교육청은 아래의 절차 등에 따라 민간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구분	세부구분	내용	근거
선정	의회 동의	민간위탁 시행 전 시의회 동의	조례 제4조 3항, 조례 제4의 2
	위원회 운영 및 동의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운영 및 동의	조례 제6조
관리	지휘·감독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수탁기관 지휘·감독	조례 제11조
	감사	위탁사무 처리 결과 매년 1회 이상 감사	조례 제13조
	성과평가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 실시	조례 제14조

나. 문제점

교육청은 2018년 결산기준 위탁사업비(210-13) 및 민간위탁금(320-02)이 집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이 관련 조례의 민간위탁의 정의인 수탁기관의 명목과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동의,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충남교육청에서 2018년 중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과 부산교육청의 사업 중 유사한 사업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충남교육청	부산교육청
사업명	체험위주의 인성교육 민간위탁	인성교육과 연계한 수상안전 체험교육 위탁
예산통계목	민간위탁금(320-02)	위탁사업비(210-13)
시설 및 프로그램	수탁기관의 물리적 시설 및 프로그램	
법적 근거	인성교육진흥법 제11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계약형태	위탁계약	
의회 동의여부	○	X
수탁기관선정위원회	○	X

민간위탁의 범위는 법률적으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할 것이나,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대해 각 교육청 단위로 조례의 적용대상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개선 및 권고사항

민간위탁의 개념 및 관련 조례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률자문 등을 통하여 명확한 판단 지침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업단위로 민간위탁에 해당할 경우 시의회 동의 및 감사실시 등 조례 상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주시고, 민간위탁이 아닌 대행사업 또는 일반용역에 해당할 경우 세목을 이에 맞게 편성하여 명확히 구분되도록 관리 부탁드립니다.

8. 성인지 결산서에 관한 사항

성인지 결산서에는 연도별로 사업 수혜 대상의 성별 실적과 예산의 성별 수혜실적을 비교 공시함으로써 성별 수혜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 현황 및 문제점

수혜 대상의 성별 실적지표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변경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변경 전 지표와 변경 후 지표를 비교 공시하는 경우에는 성별 실적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검토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세부사업명	사업명		2017년이전	2018년
1	방과후학교운영	초등돌봄교실 운영	사업 수혜 대상	전담사	학생 및 학부모
			성별수혜도 분석지표	전담사 취업률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2	교원연수지원	교원연수지원 [성교육및성폭력 (성희롱)예방강화 직무연수]	사업 수혜 대상	담당교원	전 교원
			성별수혜도 분석지표	담당교원 직무연수 이수율	전교원 직무연수 이수율

나. 개선 및 권고사항

위 성별 실적에 대하여는 분석지표의 변동에 대한 설명을 성인지결산서에 기재하거나 전기이전 지표를 당기 지표로 통일화함으로써 연도간의 비교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